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3078
------	------

2022. 2. 14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월 21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25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22. 2. 14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의승 기획조정실장)

1. 제안이유

- 자치구에 시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,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를 새롭게 분장함으로써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5조 제1항의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(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,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89개소)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함
(안 별표 □ 시민건강국).
- 나. 택시정책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물류정책과로 업무 변경함(안 별표 □ 도시교통실).
- 다. 도시계획과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로 업무 변경함
(안 별표 □ 균형발전본부).
- 라. 물재생계획과 일부 사무를 물순환정책과로 업무 변경함
(안 별표 □ 물순환안전국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단속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하고,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업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나. 서울시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의 위임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은 국회,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사, 학교, 보건소,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(제9조 제4항),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의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제9조 제7항).
- 이에 따라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(이하 “금연조례”)를 통해 도시공원,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, 중앙차로 버스정류소, 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(10만원 이하)를 부과하고 있음.
-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1,954개소로, 이중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의 단속권한은 2016년 시장방침(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계획)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되었고, 도시공원은 금연조례(제11조)¹⁾에

따라 공원녹지사업소로 단속권한이 위임되었으나, 「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」에는 적기에 반영되지 않았음.

<서울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>

연번	구 분	개소수	최초 지정일	단속주체
1	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	3	'11.3.	서울시
2	버스정류소(중앙차로)	389	'11.12.	
3	도시공원	24	'11.9.	공원녹지사업소(위임)
4	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	1,538	'16.5.	관할 자치구 (위임)
합 계		1,954		

- 서울시는 현재 금연구역 중 중앙차로 버스정류소, 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만 단속반을 운영 중이며, 정책방향을 단속 규제보다 사전예방과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단속인력을 감축하고(2020년 10명→2021년 1명) 예산을 전액 삭감할 예정임(2021년 546만원).
- 한편, 25개 자치구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과 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(총 288,961개, 법 271,885개·조례 17,076개)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(2021년말 기준 단속실적 35,205회, 단속인력 397명).
- 개정안은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으로, 금연구역 단속업무를 일원화하여 흡연행위 단속과 계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.

1)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(사무의 위임)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사무를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.

- 다만, 도시공원의 경우는 금연조례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 별도 위임되어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이 필요함.

<수정의견 조문대비표>

개정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시민건강국			
	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	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제4호	구청장
수정의견	<input type="checkbox"/> 시민건강국			
	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	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(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 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)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제4호	구청장

- 한편, 사무위임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는 위임되는 금연구역이 소규모 (광장 3개소, 버스정류장 392개소)라는 점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없이 자치구의 기존 단속인력을 활용하기로 협의되었음.

- 자치구 의견 조회 결과(2021.9.15.~9.17)에 따르면, 25개 자치구 모두 사무위임에 찬성하였으나, 종로구는 예산배정 계획의 미비, 자치구 간 경계에 위치한 청계광장 관할구의 불명확함을 지적하였음.

※ 청계광장은 종로구와 중구 간의 협의에 따라 중구가 관할하기로 결정되었음.

- 하지만,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는 사무위임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²⁾, 사무위임에 따른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액일지라도 서울시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다.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분류

- 개정안은 자치구에 대한 위임사무 중 2021년 6월에 실시된 조직개편 이후 부서 간 업무분장 사항이 조정된 것을 반영하였음.
- 지난 조직개편에서 ‘택시물류과’는 ‘택시정책과’로 명칭을 바꾸면서 물류행정에 관한 사무를 신설된 ‘물류정책과’로 이관하였고, 개정안은 화물차 관련 사무의 추가 이관을 반영해 주관 부서를 ‘택시정책과’에서 ‘물류정책과’로 변경하였음.
 - 변경되는 사무는 ‘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·임대허가·임대자가용 화물차 반환신고·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’, ‘화물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및 게시 등’, ‘화물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교부 및 게시’ 등임.

2)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(위임의 기준 등) ②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또한, ‘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’, ‘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’의 주관부서를 ‘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’에서 ‘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’, ‘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’에서 같은 국 ‘물순환정책과’로 각각 변경하였음.

<신규 조문대비표>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]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				[별표]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시계획국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시계획국			
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도시 계획과	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	○「도시개발법」제9 조제5항	구청장	< 삭 제 >			
< 신 설 >				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발전본부			
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도시활 성화과	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	○「도시개발법」 제9조 제5항	구청장	< 삭 제 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물순환안전국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물순환안전국			
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물재생 계획과	1. (생 략) 2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 23조에 따른 수계 영향권별 오염원 조사	○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(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1호)	구청장	< 삭 제 >			

현 행				개 정 안			
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<u>< 신 설 ></u>				물순환 정책과	1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 음의 사무 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 23조에 따른 수계영향 권별 오염원 조사	○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	구청장

○ 사무의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은 자치구 위임사항에 변동이 없어 내용상으로 문제는 없으나, 조직 개편이 작년 6월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후속 입법 조치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.

- 조직 개편 변경사항을 포함해 제출한(2021.8) 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에서 물류사무의 주관부서 변경사항(택시물류과→물류정책과)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바, 후속 입법조치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○ 위임사무명을 “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·징수” 로 구체화하고,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중 도시공원의 경우는 「서울특별시

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로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사무가 위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무위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함.

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되, 제11조에서 별도로 위임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함(안 별표 □ 시민건강국).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07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2월 14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임사무명을 “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·징수” 로 구체화하고,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중 도시공원의 경우는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로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사무가 위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무위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위임사무명을 “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·징수” 로 하고,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되, 제11조에서 별도로 위임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함(안 별표 □ 시민건강국).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별표의 □ 시민건강국 표 주관부서란 중 건강증진과란에서 “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”을 “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·징수(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)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			수정안			
□ 시민건강국				□ 시민건강국			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	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현행과 같음)			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제4호	구청장	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·징수(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)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제4호	구청장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□ 도시교통실 표 주관부서란 중 택시정책과 제12호란부터 제14호란
까지를 삭제하고, 택시정책과 제15호란을 제12호란으로 한다.

별표의 □ 도시교통실 표 주관부서란 중 물류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물류정책과	1.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사용신고 나. 임대허가 다.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라.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	○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5조 ○같은 법 제5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○같은 법 제5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○같은 법 제56조의2	구청장
	2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· 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	○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	구청장
	3.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 ·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	○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	구청장
	4.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	○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	구청장

별표의 □ 시민건강국 표 주관부서란 중 보건의료정책과 제6호란 다음에
건강증진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 징수 (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)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제4호	구청장
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별표의 도시계획국 표 주관부서란 중 도시계획과란을 삭제한다.

별표의 주택정책실 표 다음에 균형발전본부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균형발전본부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도시활성화과	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	○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5항	구청장

별표의 물순환안전국 표 주관부서란 중 물재생계획과 제2호란을 삭제하고, 물재생계획과 제1호란 다음에 물순환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물순환정책과	1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	○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	구청장
--------	--	----------------	--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시교통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주관부서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사 무 명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근거법령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수임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택시정책과</td> <td colspan="3">1. ~ 11. (생 략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12.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사용신고</u></td> <td>○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'이라 한다) 제55조</td> <td rowspan="4"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구청장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임대허가</u></td> <td>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'이라 한다) 제52조 제1항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다.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</u></td> <td>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라.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</u></td> <td>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13.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· 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구청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택시정책과	1. ~ 11. (생 략)			12.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			<u>가. 사용신고</u>	○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'이라 한다) 제55조	구청장	<u>나. 임대허가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'이라 한다) 제52조 제1항	<u>다.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	<u>라.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	13.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· 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			구청장	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시교통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주관부서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사 무 명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근거법령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수임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택시정책과</td> <td colspan="3"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<p style="font-size: 1.2em;">< 삭 제 ></p>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<p style="font-size: 1.2em;">< 삭 제 ></p> 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택시정책과	1. ~ 11. (현행과 같음)			<p style="font-size: 1.2em;">< 삭 제 ></p>			<p style="font-size: 1.2em;">< 삭 제 ></p>			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택시정책과	1. ~ 11. 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2.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가. 사용신고</u>	○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'이라 한다) 제55조	구청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나. 임대허가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'이라 한다) 제52조 제1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다.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라.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.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· 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			구청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택시정책과	1. ~ 11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 style="font-size: 1.2em;">< 삭 제 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font-size: 1.2em;">< 삭 제 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14. <u>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</u>	○ <u>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7조</u>	구청장
	15. (생 략)		
물류정책과	<u>< 신 설 ></u>		
	<u>< 신 설 ></u>		
	<u>< 신 설 ></u>		
	1.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	○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	구청장

개 정 안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<u>< 삭 제 ></u>			
	12. (현행과 같음)		
물류정책과	1. <u>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</u>		구청장
	가. <u>사용신고</u>	○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5조	
	나. <u>임대허가</u>	○ 같은 법 제5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	
	다. <u>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</u>	○ 같은 법 제5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	
	라. <u>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</u>	○ 같은 법 제56조의2	
	2. <u>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</u>	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	구청장
	3. <u>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</u>	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	구청장
	4.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	○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	구청장

현 행

시민건강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생 략)		
<u>< 신 설 ></u>			

도시계획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도시계획과	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	○「도시개발법」제9조제5항	구청장
토지관리과	1. ~ 2. (생 략)		

개 정 안

시민건강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·징수(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)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제4호	구청장

도시계획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<u>< 삭 제 ></u>			
토지관리과	1. ~ 2. (현행과 같음)		

현 행

< 신 설 >

물순환안전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물재생계획과	1. (생 략)		
	2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		구청장
	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	○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(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)	
< 신 설 >			

개 정 안

균형발전본부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도시활성화과	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	○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5항	구청장

물순환안전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물재생계획과	1. (현행과 같음)		
	< 삭 제 >		
물순환정책과	1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		구청장
	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	○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	